

# 주택 · 건설경영정보

## 주택건설의 공사감리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 주기총성과, 2004. 12.30

■ 앞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과정에서 나 타나는 부조리 소지가 차단하고, 주택건설공사의 사업주체가 감리자의 독단적인 행동을 견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 건설교통부는 전문기관(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공무원, 관련 건설·감리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기준」을 전면개정, '04.12.30일 고시하여 내년 2.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 및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

- 300세대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전문감리회사
- 300세대 미만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는 감리자(회사)에 소속된 감리원(현장에 상주하는 총괄감리원과 이를 보조하는 보조감리원)이 수행

■ 건설교통부가 12.30일 고시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감리자 지정을 위한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 감리자 선정입찰에서 탈락한업체가 지정업체를 부적격자로 몰아 탈락시키는 분쟁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낙찰자선정전에 감리자 지정신청 입찰내역증 감리원 배치계획 등을 공개 토록 하여 경쟁업체에서 상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감리원의 이중배치 및 부적격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리자지정과정을 투명하게 함

■ 감리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리자 지정 입찰에 참여한 경우 당해 감리자 및 소속 감리원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감리자 지정 입찰 참여를 금지하여 공정한 입찰을 도모

■ 감리원이 3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감리자는 감리원을 임의 교체할 수 있어 감리자가 허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감리원을 다른 현장으로 배치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 \* 감리자가 현장에 종사하는 고급기술 감리원을 빼내 다른 현장의 감리자 지정입찰에 참여하는 부작용도 일부 발생

- 앞으로는 감리원 교체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요양기간 중에는 당해 감리원이 다른 공사의 감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감리원의 잦은 교체로 인한 부실감리를 방지

② 감리자 지정 입찰과정에서 기술능력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 현재 소속 감리원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상훈을 받은 경우 감리자에게 기술능력 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토록 하고 있어 상훈을 받기 위한 감리자 로비 등 부작용이 발생

- 상훈에 따른 기술능력 평가 가산점 제도를 전면 폐지하여 부조리의 소지를 원천 차단

- \* 종전에는 훈·포장, 대통령·장관표창 0.5, 시·도지사표창 0.3, 시장·군수·구청장표창 0.2점 가산

■ 신기술 및 특허를 획득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 시 가산점을 주어 감리관련 신기술 개발을 유도(최고 2점)

③ 감리원 배치기준을 강화하여 보다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택품질의 질적 향상을 도모

■ 현재는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 공사를 하는 경우 감리자는 당해 현장에 4인의 감리원만 배치하면 되나,

- 앞으로는 매 500세대마다 추가감리원을 1인씩 배치토록 의무화하여 견실시공을 도모하는 한

편, 신규 전문 감리원의 육성을 도모  
⇒ 3년 동안 연인원 1,145명의 이공계 출신자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④ 주택건설공사 사업주체(사업자)에게 감리자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택건설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 감리원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고의적으로 공사진행을 방해할 경우 주택건설 사업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감리업무가 종료되면 사업주체는 감리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감리협회 등에 통보도록 하고, 감리협회 등은 이를 보관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주택건설 현장의 감리자 지정 입찰시 감리협회 등으로부터 당해 감리자의 업무수행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기술능력 평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문답자료

1. 이번 기준개정의 동기가 된 도배·조경·도장 등 13개 마감工種에 대한 감리대상 포함은 어떻게 되었는가?

■ '99. 2월 주택건설촉진법(의원입법, 조진형의원 등 24명)을 개정하면서 도배·조경·도장 등 13개 공종을 감리대상에서 제외하여 "입주자 사전점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 입주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공정에 대한 하자발생 등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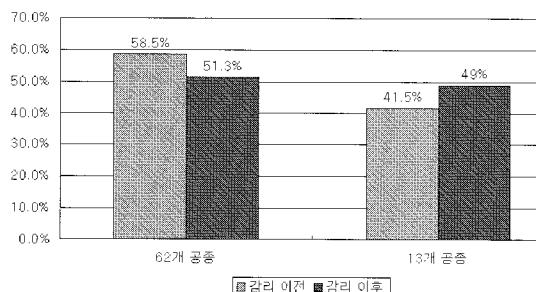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 실시한 감리제도

##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개선 연구」용역(03.4~12, 건기원)

- 13개 마감공종을 감리대상에서 제외한 이후 하자발생\*이 증가(7.5%)하고, 입주자 사전점검의 한계와 공사의 연계성과 부실공사방지 및 주택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 도배 · 조경 · 도장 등 13개 마감공종을 감리대상범위에 다시 포함(04.12.8 주택법개정안 국회 가결)

〈감리이전과 이후의 하자발생빈도 추이〉



- 감리제외공종(13개)이 다시 감리대상에 포함될 경우 예상되는 입주의의 추가 부담은 현재 분양가가 자율화되어 정확한 입주의의 추가 부담 예측은 곤란하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13개 감리제외공사를 감리대상에 포함할 경우 예상되는 분양가 상승액은 평균 세대당 696천원 정도로 분양가에 비해 미미한 수준임

〈표 1〉 13개 감리제외공사 감리포함시 예상되는 감리비 증가액

구분	아파트 수	감리제외 공사비의 감리비(평균)	감리제외 공사비의 세대당 감리비(평균)
300세대 미만	140	79,687 천원	711 천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39	278,665 천원	651 천원
500세대 이상	55	593,264 천원	707 천원
전체 세대		233,562 천원	696 천원

\* 자료 : 한국건설감리협회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03.4~'03.12)

## 2. 13개 공종환원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은?

- 감리업계는 全공종을 감리(단서규정 삭제)할 수 있도록 되어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주택의 품질확보와 부실방지에 전념할 수 있어 이를 크게 반기며 찬성하고,
- 건설업계는 감리인력 낭비와 감리비 인상으로 건설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분양가 상승과 감리자의 책임장치 미흡 등 추가조치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반대해 왔음  
⇒ 이에 따라 금번 감리자지정기준개정시 부당한 감리자를 사업주체가 교체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완료후 감리업무수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주체가 감리자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기에 이롭

- \* 1)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부당한 요구나 고의적으로 공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감리자지정권자(시장 · 군수)에게 당해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감리원 횡포를 방지
- 2) 공사가 완료된 후 사업주체가 감리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만족빈도가 높은 감리자는 다른 공사의 감리자지정시 가점(1.0)을 부여하도록 함

## 3. 이공계(토목, 건축, 설비분야)출신 종업자의 일자리창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신규감리원의 의무 배치 배경 및 효과는?

■ 주택건설공사와 관련한 이공계(건축·토목·설비분야)대학 졸업자의 취업난이 극심, 청년실업자 증가(8.0%)

- 이공계출신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전문감리원의 양성을 위한 과정 필요
  - 현재 활동중인 감리원 대부분이 건설회사 또는 공무원 퇴직자들로써 명맥을 이어 감리할 수 있는 젊은 감리원이 없음

■ 이에 따라 지난 1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를 기다리고 있는 주택법 개정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13개 공종의 감리대상환원으로 늘어나게 될 감리대가(비용)의 일부를 신규 감리원채용비용으로 활용하여 취업난을 덜고, 전문감리원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지정시 매 500세대마다 신규감리원\* 1인씩 추가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전문감리원을 육성하고, 이공계 전공자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2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감리사보자격에 해당하는 시점으로부터 그 경력이 3년 이하인 자 (대학졸업자 및 기술계자격취득자)

- 500세대 이상 1명, 500세대 이상의 경우 매 500세대마다 1명씩 추가(최대 4명까지 배치) 배치함으로써 1,000세대이상은 2명, 1,500세대이상은 3명, 2,000세대이상은 4명을 배치하게 됨

\* 개정안에 따라 신규감리원을 추가 배치할 경우, 최근 3년동안('02~'04) 감리대상물량 감안하여 산출한 신규감리원은 연인원 1,145명(연간 약 400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효과 있음.

- ▶ '04.12.16 통계청 발표 「11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전체 청년실업률(15~29歳)은 8.0%
  - 20대 청년실업자 35만 1천명으로 전체실업자 79만 2천명의 44%에 이른

#### 4. 이번 개정으로 얻어지는 핵실효과는?

■ 금번 감리자지정기준의 개정으로 얻어지는 효과는

- 첫째, 단지규모에 따라 이공계출신의 신규인력을 감리현장에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평균 주택건설공사 절대공기 3년간 연인원 1,145명의 일자리 마련을 들 수 있으며,

※ 건축·토목·설비분야의 전공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어 침체되어 가고 있는 이공계대학생(2년제 대학포함)들에게 희망을 주고, 감리업계의 조기정착에 도움을 주는 등 부실감리방지에도 효과가 큼

- 특히, 졸업생에 대한 진로를 걱정하던 이공계대학에서는 크게 반길 것으로 예상

- 둘째, 감리자의 자질함양과 우월적 위치의 독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감리자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주요 견제기능으로 자질이 부족하거나 공사와 무관하게 부당요구를 하는 감리원의 교체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사업주체가 감리자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다른 공사의 감리자 지정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택지개발예정지구 549만평 지정

간교부 공공주택과 2004. 12. 27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개발을 위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정이후 민간 택지공급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당분간 공공택지 확보(지정) 물량은 확대될 듯 수도권 5개 지구 496만평을 포함 총 9개 지 549만 평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양주옥정(185만평), 양주광석(36만평), 평택소사별(91만평), 화성 향남2(94만평), 오산궐동(90만평), 울산방어(7만

평), 홍성남장(8만평), 김해진영2(30만평), 서귀포강정(8만평) 지구로 면적이 30만평 이상 지구는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구지정 심의를 완료하였다.

이번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04년말 까지 주공·토공·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확보한 공공택지 면적은 약 1,800만평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택지 종류	합 계	기 지 정	지정 계획*
택지지구	1,554만평	1,176만평	378만평
기타 도시개발 등	264만평	218만평	46만평
합 계	1,818만평	1,394만평	424만평

\* 지정계획 물량은 향후 심의 결정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

특히,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물량은 제1기 신도시를 추진하였던 '89년 3,173만평 지정 이후 최대인 1,500만평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금년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물량이 증가하게 된 것은 수도권 및 주요 대도시권의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 택지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서 개발요건을 강화한 이후 민간 택지개발은 위축되고 있어 '04.7.1 경제장관간 담화에서 공공택지 지정을 확대키로 결정한 바에 따른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주택사정은 양적측면에서 주택보급율 100%를 상회(101.2%)하고 있으나 수도권

(92.8%) 및 대도시(서울 86.3%) 지역은 여전히 주택이 절대 부족하고, 질적 측면에서는 전체가구의 23% 수준인 334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110만 가구가 단칸방에 거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규모의 경제로 인한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부담 등을 통해 공공에 환원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반시설과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동선계획 및 단지설계로 입주자 선호도 측면에서 민간택지에 비하여 월등한 실정이다.

민간택지 개발의 경우 개별 입지의 한계로 인해 적정 공공시설 확보 및 일관성 있는 계획 구상에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용인 등 개발압력이 가중되었던 지역을 학교, 도로 등 충분한 기반시설 없이 민간 개별입지를 허용함으로써 토지이용계획에 차질을 초래한 바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 외 미개발지는 공영개발 하거나 일정규모 이상 기반시설을 확보한 이후 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택지지구는 친환경 개발을 원칙으로 주변 지형과 연계하여 녹지축을 설계하고 기존 수변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며 녹지율도 가급적 25% 이상으로 할 예정이다.

이번 택지지구 지정으로 주택종합계획에 따른 연평균 1,300만평 공공택지 공급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특히 수도권에서 2~3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주택 및 택지 절대 부족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 개요〉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천m <sup>2</sup> )	시행자
			(천평)	
	양주옥정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고암동, 희암동, 율정동, 삼승동 일원	6,105 (1,847)	토지공사
	양주광석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광석리, 우고리 일원	1,200 (363)	토지공사
	평택소사별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죽백동, 동삭동 일원	3,022 (914)	토지공사
	화성향남2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하길리, 상신리 방축리 일원,	3,107 (940)	토지공사
	오산궐동	경기도 오산시 궐동, 금암동, 가장동, 가수동 등 일원	2,962 (896)	경기공사
	울산방어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일산동 일원	221 (67)	주택공사
	홍성남장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을 남장리 일원	250 (76)	주택공사
	김해진영2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여래리, 본산리 일원	1,003 (303)	토지공사
	서귀포강정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	277 (84)	주택공사
	합계		18,147 (5,490)	

## 계룡대실지구 46만평 도시개발구역 지정

건설교통부 도시국 도시관리과, 2004. 12. 31

### ■ 사업개요

- 위치 : 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두마면 농소리 일원  
※ 대전도심에서 약 10km, 호남고속도로 계룡 IC에서 북서쪽으로 약 1km
- 면적, 주택호수(임대주택) : 463천평, 7,400호 (1,900호)
- 사업시행 : 한국토지공사

국도1호선 우회도로, 국도4호선 확장 등의 광역 교통망이 확충될 예정으로 있어 인근 도시와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개발잠재력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임

- 본 사업은 계룡시의 도시세력권 확장에 따른 주택수요에 부응한 중심주거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생활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계룡시의 부족한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체계적인 도시정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른 계획적 개발로 인구 약 2만 3천명(7,400가구)을 수용하는 중저밀의 친환경 전원도시로 조성되고, 주거용지 46.5%(215천평), 상업용지 3.5%(16천평), 공원·녹지 20.65%(95천평), 도로 및 공공편익시설 등 시설은 29.4%(137천평)로 개발될 예정임 또한, 올해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총 사업비 규모는 약 23.2조원으로 최근 침체에 있는 건설경기 진작 및 사회 여유자금 선순환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 개발여건

- 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두마면 농소리 일원의 본 지구는 계룡출장소 출범시부터 도시계획에서 개발예정지로 관리하여온 지역으로 계룡시 남측에 위치하여, 대전도심으로부터 약 1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음
- 사업지구 주변에 호남고속도로 및 국도1호선, 국도4호선, 남북간도로 등이 지나고 있으며, 향후

##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건설교통부 주택국 주거복지과, 2005. 1. 3

- 건설교통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주택경기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하여 '05.1.20부터 주택구입·전세자금 및 건설자금 금리를 각각 0.5% 내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 금리인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주택구입자금이 현행 5.8%에서 5.2%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이 5.5%에서 5.0%로 인하된다.
- 이 경우 주택관련 이자부담이 연간 약 1,100억원 감소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 \* 주택수요자자금 금리인하 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주택구입자금	5.8	5.2
근로자·서민전세자금	5.5	5.0
매입임대자금	5.5	5.0
입주자 앞 대환금리	5.8	5.2

## \* 주택건설자금 금리인하 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중형임대(60~85㎡)	4.5	4.0
국민임대(주거환경개선지구내 11평)	3.0	1.0
공공분양(60㎡미만/60~85㎡)	5.0 / 6.0	4.5 / 5.5
후분양(60㎡미만/60~85㎡)	4.5 / 5.5	4.0 / 5.0

뿐더러 주택수요의 급격한 위축을 막아 주택경기의 연착륙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금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5.95%) 등 여타 시중 주택자의 금리 차이가 확대되어,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수요측면의 융자금리 인하와 함께 공공분양주택건설자금 및 중형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금리도 현행대비 각각 0.5% 인하되며 건설자금의 호당 대출한도도 현재보다 최대 1,500만원 상향조정된다.

- 이 경우 최근 미분양물량 증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들의 금융비용이 감소되고 주택건설사업의 수익성이 제고되어 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미분양추이(호) : '03.3월 23천 → 04.1월 41천 → 6월 50천 → 11월 65천

■ 건설교통부는 또한 도심 저소득층에게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소형 임대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건설되는 소형(11평) 국

민임대주택에 대한 기금 지원금리를 3→1%로 인하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는 물론 재정착율도 높아져 동 계층의 주거안정성이 재고될 것으로 보인다.

## ■ 건설교통부는 금번 금리 인하가

- “무주택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사회통합 유도에 기여하는 동시에,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주택경기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고용창출은 물론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유도를 통한 중장기적 집값 안정기조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 건설업 20.8, 제조업 14.4

- “한은에 따르면 ’05년 상반기 건설투자가 전년 동기대비 0.2% 감소하는 등 건설경기의 급격한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거래 신고제 등 각종 규제정책과 기금지원 조건 등을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선제적(pre-emptive)으로 운용함으로써 주택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건교부, 각종 계획 및 사업추진시 환경검토 크게 강화

## - 중장기 계획수립시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국토정책과, 2004. 12. 29

내년부터 국토의 이용 및 개발, SOC 건설 등 건설교통부 소관 각종 계획수립 및 개발사업 추진시 환경과 에너지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대형 국책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환경문제로 사업이 중단, 자연되고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 주택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건설교통부 소관 24개 중장기계획 수립시 개발과 환경의 조화, 지속가능발전 등 친환경적인 추진전략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략환경평가제도(SEA)"를 도입,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전략환경평가(SEA) :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전략환경평가는 영국,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시행하여 왔으나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 시행하는 것으로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처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입장서 실천하겠다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전략환경평가업무처리규정(훈령)"을 제정하였으며 차관을 위원장, 민간전문가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산·학·연·관,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전략환경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수립 초기부터 친환경적 추진전략과 대안마련을 위한 평가항목과 방법 등을 검토, 심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전략환경평가대상이 되는 24개 중장기계획보다 구체화된 개발방향이나 내용을 담고 있는 28개 계획중 근거법령에 환경성 검토규정이 없는 등 사전환경성 검토가 미흡한 13개 계획에 대해서

는 법령개정시 환경성 검토규정을 두도록 하고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 이를 추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24개 중장기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민의 참여확대와 공감대 조성을 통해 계획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확정전에 공청회, 토론회 등 공개적인 의견수렴의 기회를 1회 이상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도로, 철도사업의 경우 현재 사업화정후 실시설계단계에서 주민공람 등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하고 있어 환경 등 근본적인 문제 발생시 사업의 취소, 변경 등이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등 노선이나 사업이 최초로 선정되는 단계에서 사전에 환경성을 검토한 후 주민공람 등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되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전에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5년도 도로, 철도사업중 각각 1~2개 사업을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볼 계획이다.

### 문답자료

#### 1. 전략환경평가와 현행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환경영향평가는 입지 및 노선, 개발사업이 확정된 후 사업 시행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환경훼손 저감방안을 강구, 시행하는 것이 목적
- 사전환경성검토는 개발계획수립 및 사업확정



전에 입지의 타당성,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환경문제 예방 목적

- 전략환경평가는 구체적인 개발사업 등이 전제되지 않은 상위 정책적, 지침적 계획의 정책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복수 대안 등을 비교, 검토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수립 목적

## 2. 전략환경평가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는가?

- 전략환경평가대상은 국토종합계획, 주택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건설교통부 소관 24개 중 장기계획(별첨참조)이나 건설교통부 훈령으로 시행되므로 실제로는 건교부나 산하 기관이 직접 수립하는 계획에 대해 서만 시행됨(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해 본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법제화 계획임)
- 기본구상이나 공간구조의 대안설정 및 환경적 적정성,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성, 지역생활환경·자연환경·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게 되며
- 산·학·연, 시민단체, 정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환경평가위원회에서 계획수립초기 단계부터 계획의 내용 및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방법, 범위, 절차, 평가결과 등을 검토? 심의하고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시행됨

## 3. 환경관련 법령에 제도화해야 하지 않는가?

- 중장기계획은 개별적인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정책 방향, 추진전략, 방법 등을 담는 정책적 계획이고

■ 계획의 대상지역도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등 매우 광범위 하므로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상에 규정된 사전환경성검토 즉 정량적, 구체적인 환경성검토는 곤란함

- 그러나 하위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개발과 환경의 조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등을 모색은 필요함

■ 따라서, 계획수립기관에서 계획수립 초기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을 꼭넓게 수렴하여 계획의 특성, 성격에 맞게 이를 검토, 반영하고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외국에서도 계획수립기관이 전략환경평가를 시행후 협의)

## 4.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없을지?

- 개발사업 등이 전제되지 않아 구체성이 미흡하고 기간이나 지역 등 계획수립 범위가 광범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 평가항목, 방법, 결과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환경평가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하나하나 논의하고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함

## 5. 외국의 전략환경평가 사례는?

-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EPA)에서 비롯되어 1980년대 말부터 네덜란드,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형태는 국가여건에 따라 법률, 행정 명령, 지침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1993년도부터 환경정책기본법에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참여와 평가위원회는 제도화 되어 있지 않음 (2006년부터 주민참여는 도입예정)